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7일,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9.22.)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의원)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친권·미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식과 이해도 부족,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자체장의 친권상실 등 선고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는 활발히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장기간 소재불명·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퇴원·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전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개정안은 친권 상실 등 선고나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거나 발견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하여 법률적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재판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보호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지원사업을 통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정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후견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함.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구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위탁부모, 후견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위 사업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청 관련 문의 대응 및 추천자 서류 검토, 소송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친권 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소송 지원을 하고 있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지원 건수 236건 중 231건이 종결되었고, 종결된 231건 중 인용은 206건, 자진 취소 및 기각은 25건으로 나타남.

다만, 개정안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법률상담을 하는 사항의 범위는 ‘후견인 선임 지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후견인 선임 지원 등’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법률상담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겠음. 그 외, 제20조의2제4항 중 법률상담의 ‘내용’을 법률상담의 ‘범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비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법률상담을 법률상담 지원으로 수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업무위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었음.

[붙임]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비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법률상담을 법률상담 지원으로 수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업무위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함.

수정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제20조의2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함
(안 제10조의2제2항제12호의2 신설).

나. 아동권리보장원이 직접 법률 상담을 하게 될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법률상담 지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2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0조의2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

안 제20조의2의 제목 “후견인 선임 지원”을 “후견인 선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로, 제1호 중 “선고 청구”를 “선고 청구 요청”으로, 제2호 중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후견인 선임·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법률상담”을 “법률상담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 업무를”을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률상담의 내용 및 절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2. (생략) <u><신설></u>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제20조의2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u> 13. (현행과 같음)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 ⑧ (생략)

<신설>

제20조의2(후견인 선임 지원)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1. -----

-----선고 청구 요청-----
2. -----
-----후견인 선임·변경-----

3. · 4. (개정안과 같음)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자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장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률상담의 내용 및 절차,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 ----- -----<u>사람</u> ----- ----- ----- ----- ----- -----<u>법률상담의 지원</u>----- -----. ③ ----- -----<u>「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u>-----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 ----- -----.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0조의2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
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
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의2 제20조의2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u>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0조의2(후견인 선임 지원 등)</u>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

	<u>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u> <u>2.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u> <u>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탁할 수 있다.</u>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